

## 미국 영업비밀법의 치외법권적 효력

작성자: Hwan Kim, Jon DeFosse, Rob Masters (Nov. 13, 2024)

미국은 최근 미연방 제 7 항소법원의 *Motorola Solutions Inc. 대 Hytera Communications Corp. Ltd.* 판결로 인해 전 세계 영업비밀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 법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 7 항소법원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의 위반 행위의 발전”이 있을 경우 미영업비밀법이 치외 법권적으로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동 판결에 따르면, 미국 외에서 절도한 영업비밀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미국에서 마케팅한 행위는 “미국 내에서의 위반 행위의 발전”에 해당하며, “미국 내에서의 위반 행위의 발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피고회사의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otorola* 사건에서는 *Hytera*의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억 3,58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의 지급이 명해졌다. 본 판결은 전 세계를 관할권으로 보는 미국 반독점법 및 반부패법과 유사하게 미영업비밀법의 관할을 범세계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이유가 있다. 영업비밀이 국제적으로 침해되거나 절도 된 경우, 기업들은 미국 법원을 관할로 하는 소송을 고려할 수 있게 된 반면에, 미국 외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직원들이 미영업비밀법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관리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 고소 내용

*Motorola* 사건에서 영업비밀 탈취 관련 혐의는 미국 외에서 이루어졌다. *Hytera*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말레이시아에서 *Motorola* 출신의 엔지니어 세 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곧이어 *Motorola*의 영업비밀이 담긴 수천 개의 문서를 다운로드했고, *Hytera*는 이를 이용해 *Motorola*의 제품과 기능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디지털 모바일 라디오(DMR) 제품군을 출시했다. 즉, *Motorola* 출신 엔지니어의 고용, 문서 취득 및 제품 개발은 모두 미국 외에서 이루어졌지만, *Hytera*는 이 DMR 제품들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마케팅하고 판매했다.

지방법원 결과지방법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Hytera*가 *Motorola*의 영업비밀을 탈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Hytera*의 절도 행위가 미국 외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의 발전”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결하여 *Hytera*의 해외 매출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허용했다. 배심원단은 *Motorola*에 대하여 1억 3,58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 외에도 영업비밀 절도에 대해 2억 7,16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해주었다. 항소심에서 *Hytera*는 영업비밀 절도 책임을 인정했지만, 미국 영업비밀법의 치외법권적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제 7 항소법원 판결

제 7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수용하며 미영업비밀법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위반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미국 외에서 발생한 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전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18 U.S.C. § 1837 참고. 해당 조항은 본래 형사상 영업비밀 범죄의 맥락에서 도입되었으나,

항소법원은 해당 조항이 기업 간 민사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제 7 항소법원은 다른 미국 항소법원들이 미국 영업비밀법의 치외 법권 적용에 대해 판결한 바 없다고 인정했으나, 동 판결은 지방법원의 과거 판례들과 일치한다. 예컨대, *Medcenter Holdings Inc. 대 Web MD Health Corp.*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보호법의 치외법권적 적용은 형사 및 민사 사건을 불문한다는 판결들이 압도적”이라고 판시했다.

제 7 항소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첫째, “미국 내에서의 위반 행위의 발전”의 뜻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둘째, 미국 내에서 절도 행위가 완료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부인했다. 셋째, 원고는 손해배상액 계산의 근거로 한 미국 외 매출액과 “미국 내에서의 위반 행위의 발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 결론

제 7 항소법원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영업비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절도와 관련된 치외법권적 적용과 상당한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기업들은 미국 반독점법이나 반부패법의 글로벌 적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교육 및 준법경영 프로그램과 유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Motorola* 사건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미국법원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영업비밀의 절도를 당한 기업들은 탈취 행위가 미국 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